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5
------	-----

2014. 12. 4.  
기획경제위원회

## I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1월 28일, 金容錫의원외 33명

나. 회부일자 : 2014년 12월 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2014. 12. 4)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 II . 제안설명의 요지(金容錫 의원)

가. 제안이유

- 청년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존재로서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을 누려야 함.

- 그러나 저성장 단계에 들어선 경제, 심화되는 불평등으로 인해 청년은 취업난, 주거불안, 학자금 부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위기를 겪고 있음. 특히 청년의 자립기반이 무너지고 연애·결혼·출산 등을 포기하는 이른바 삼포세대 현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관련한 법적 근거가 부재할 뿐 아니라 사회적 지원체계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본 조례안은 청년의 삶을 중심에 두는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의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 책무와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고용 확대, 주거 안정, 부채 경감, 생활 안정, 문화 활성화 등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목적으로 함.

## 나. 주요내용

- 시장에게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부과함(안 제6조~제7조).
- 청년정책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
-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부채경감,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등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시장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17조).

-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와 기타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19조).
- 청년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제21조).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 가. 조례안의 개요

- 본 조례안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주거·일자리·생활안정을 지원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조례안 발의 의미와 배경

- 최근 급변하는 환경 변화속에서 청년층은 높은 실업률과 주거문제, 학자금 부담 등의 다양한 현실적 문제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이 없는 상황임.
-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으로 높은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와 장기저성장 기조의 지속 등으로 청년의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표 1〉 최근 5년간 청년 및 전체 실업률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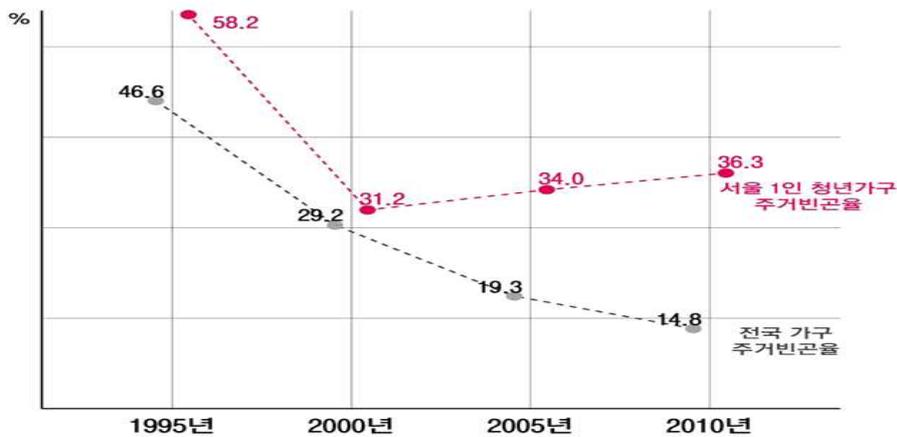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4분기	2014. 2/4분기
전 체	3.6	3.7	3.4	3.2	3.1	4.0	3.7
청 년	8.1	8.0	7.6	7.5	8	9.8	9.4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인용. 청년은 15세~29세 이하를 의미함.

- 더욱이, 최근 직업능력개발원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선망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층은 57만 6천명에서 50만 1천명으로 7만 5천명(13%) 줄어 일자리의 수 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에서도 청년 일자리의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sup>1)</sup>.
- 청년층의 주거빈곤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국 청년 주거빈곤율이 14.7%, 1인 청년 주거빈곤율은 23.6%로 전체 주거빈곤율(13.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 더욱이,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해 서울지역 1인 청년가구 주거빈곤율이 36%를 넘어서 청년 상당수가 주거문제에 있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음.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300인 이상 기업의 정규직이거나 근로조건이 양호한 금융, 보험, 전기, 가스, 수도, 국방, 행정 분야 정규직 일자리를 ‘선망 일자리’로 분류해 조사한 결과 2005년~2014년 사이 선망 일자리가 45만개 이상 늘어났지만 청년층(15~29세)의 선망 일자리 수는 7만 5천개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서울 1인 청년가구 주거빈곤율<sup>2)</sup>



※ 자료 : 민달팽이 유니온 자료 재인용

- 최근에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학자금 부담으로 인한 학자금 대출 부담과 대출금 연체, 이로 인한 청년층의 신용악화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함.
- 이처럼 청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실업·주거빈곤·학자금 부담과 이로인한 신용악화의 문제는 청년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며, 이런 상황을 오랜시간 방치할 경우 각종의 사회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이런 상황임에도 청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은 여전히 부족해 「여성발전기본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노인복지법」 등 여성과 아동·청소년·노인 등을 위한 기본법들이 제정되어 있는 반면, 청년층을 대상으

2) 주거빈곤율은 「주택법」에 규정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율에 지하 및 옥상,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기타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를 더한 수치

로 하는 기본법은 이제 겨우 발의되어 상임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 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제7조)

- 안 제6조는 시장에게 5년마다 청년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고용·주거안정·부채경감, 생활안정과 권리보호 등을 포함한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의무를 부과함.
- 안 제7조는 기본계획에 다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의무를 정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있음.
- 청년정책에 대한 서울시(이하 “시”)의 비전과 추진목표, 구체적인 추진일정 등이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고, 또 정기적으로 실적이 관리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각종 계획의 수립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계획을 통해 청년을 비롯한 당사자들의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 다만,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가 청년고용 촉진과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있는 사정을 고려해, 기본계획이 청년

일자리 기본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라.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안 제9조)

- 안 제9조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근거와 심의내용,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이는 위원회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의 조정과 협력, 청년정책의 평가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정책의 계획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 특히, 20명 이내의 위원 가운데 5명 이상의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장을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한 것은 청년정책에 대한 시의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시가 수립하는 각종 청년정책의 적시성을 강화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현재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청년일자리위원회’, 청년실업 문제를 다루는 희망경제위원회 산하의 ‘사회적경제 분과위원회’와의 기능과 역할 중복을 고려한 관계 정립이 필요할 것임.

## 마. 청년에 대한 각종 지원 노력(안 제10조~제17조)

- 안 제10조부터 제17조에서는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부채경감, 생활안정,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및 권리보호에 대한 시장의 지원노력과 대책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현재 청년이 당면하고 있는 고용확대나 주거안정 문제, 부채경감과 생활안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 학습과 교육을 받을 권리, 역량개발과 교육여건 개선, 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환경 조성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을 모두 담아 청년이 처한 최근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단기적 지원은 물론이고, 청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 하는데 필요한 각종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청년의 고용확대, 주거안정 및 부채경감과 생활안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개별적인 조례의 제정과 같은 후속조치가 동반되어야 할 것임.

## 바. 청년허브의 설치·운영(안 제18조, 안 부칙 제3조)

- 안 제18조는 청년정책의 추진기구로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이하 “청년허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이는 이미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허브’의 명칭과 기능을 확대·

조정해 일자리를 포함한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청년 주거안정과 부채경감 등의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사례 발굴 등 청년정책의 실질적인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됨(참고자료).

- 다만, 청년허브의 기능과 역할이 기존보다 확대되고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청년허브의 조직확대나 사업영역 확대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적정성 판단의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사.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안 제19조~제21조)

- 안 제19조는 청년과 관련한 각종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시가 별다른 자치법적 근거 없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전용공간의 설치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을 정하고 있는 안 제20조는 일자리·주거·금융·생활·문화 등 다양한 청년문제에 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 강화와 정책의 대응성을 강화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와 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안 제21조도 향후 확

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의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단체나 기관과의 협력 필요성을 대비한 조치로 판단됨.

- 이상과 같은 조치들은 청년문제의 해결을 위한 관계단체나 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나 무차별적인 사업확장이나 검증되지 않은 단체와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과정에서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 마. 청년의 부채 경감
  - 바. 청년의 생활안정
  -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 아. 청년의 권리보호
  - 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서울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혁신·경제·주택·복지·문화 등 관련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⑧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회의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⑪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⑫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시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

시킴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지표를 연구·개발하여 시 및 출자·출연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 등과 연계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청년의 부채경감 등) ① 시장은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위반한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①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허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이하 ‘청년허브’ 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허브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4.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지원
5. 청년의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6. 청년의 주거안정, 부채경감, 문화활성화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의 사업 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
7.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
8. 기타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허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허브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 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치구,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와 제13조를 각각 제11조와 제12조로 한다.

제3조(청년허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허브’는 이 조례 제18조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며,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